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6. 27.(화) 11:00
6. 28.(수) 조간
배포 2023. 6. 27.(화) 09:00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 적극 추진

- 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적법성 논란 등으로 신고 및 시설개선 곤란
- 가축사육제한 예외 시설로 명확화, 최대 10,000㎡ 농지전용 허용
- 개발제한구역 등 위치 시설은 이전, 불법 가설건축물은 재건축 지원
- 법적 쟁점 없는 합법 시설은 신고제 시설요건에 맞게 개보수 추진
- 전체 시설 대상 개별 컨설팅 추진, 개선 유형·방향 구체화 후 이행
- 유실·유기동물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이며,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등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에 도입되었다(동물보호법 개정).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하여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최대 사설보호소 였던(1600여마리) 애린원은 열악한 환경, 후원금 횡령 등 문제로 강제철거('19.9)
** ('23.4) 400마리 이상 보호시설 신고 의무, ('25.4) 100마리 이상, ('26.4) 20마리 이상

아울러 정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해석을 명확히 한다.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시설로 명확히 하여 지자체에 알리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에서 배제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이 기존 1,000㎡에서 10,000㎡로 확대된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입지·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개선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중성화수술 및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입양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 및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런 지원정책과 함께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시설 폐쇄 포함)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발표 이후 바뀌는 모습 예시

1.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던 시설에서 보호되던 ‘동동이’(가명)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어 철거명령 위기에 있던 a보호시설은 이번 대책에 따른 A시 조례개정으로 입지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동동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B 시설에서 보호되던 ‘건강이’(가명)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B보호시설은 열악한 시설에서 동물을 보호 중이었으나, 민간동물보호단체와 정부로부터 입지부터 시설설계 및 건축까지 컨설팅, 지원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좋은 환경에서 ‘건강이’와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사례 및 사진
별첨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영조 (044-201-2611)
		담당자	서기관	김고은 (044-201-26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사례 및 사진**



<동물자유연대(동자연) 보호센터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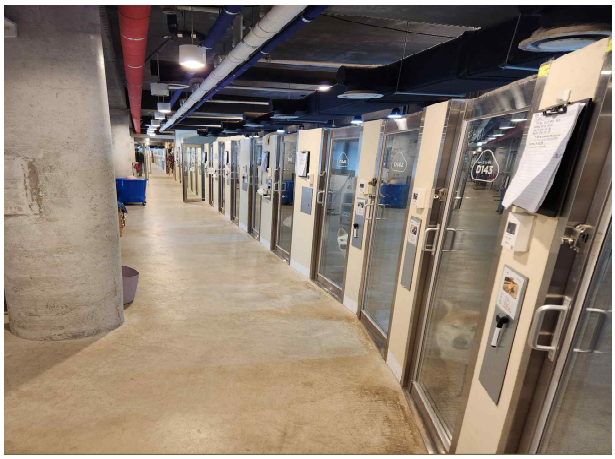


<동물자유연대(동자연) 보호센터 내부>

국내 최대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경기도 남양주 소재
6개동 1600평에서 약 310여마리 보호 중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우수 사례 중 한 곳



<카라에서 운영 중인 보호센터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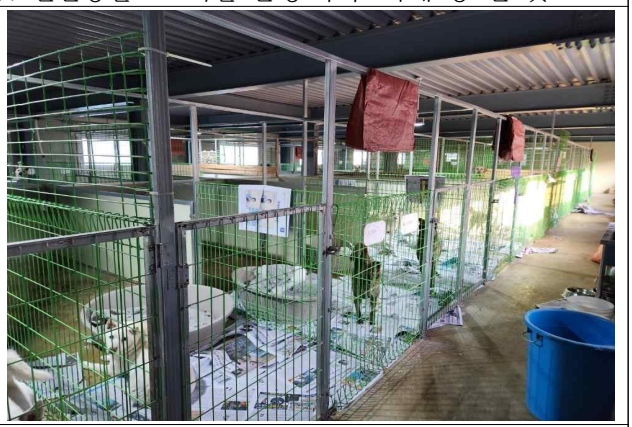


<카라에서 운영 중인 보호센터 내부>

국내 두 번째 규모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 경기도 파주 소재
타원형 2층건물 1240평에서 250여마리 보호 중,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우수 사례 중 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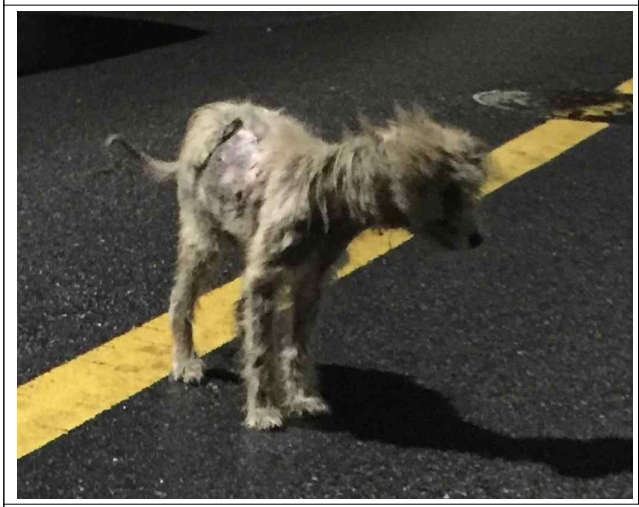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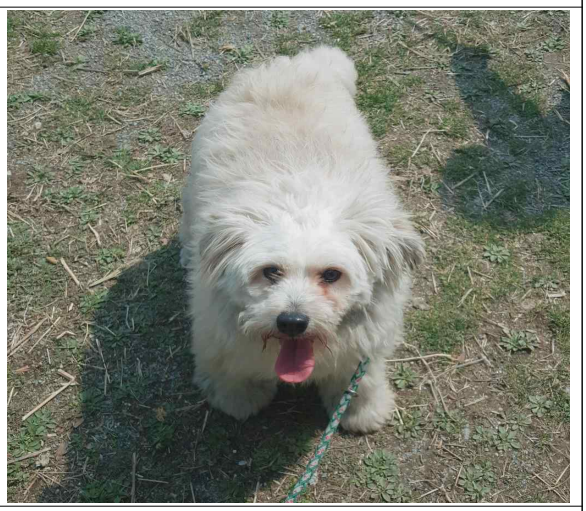


비영리민간단체 P에서 운영 중인 시설 외관



P시설 내부, 분뇨처리를 위해 신문지 활용 중

운영이 어려워진 타 보호소를 인수해 부지마련 및 보호소 설립, 보호실 2개동에서 380여마리 보호 중
활발한 자원봉사와 기부금 등을 활용해 보호시설 운영 중이며, 연예인 봉사단 참여도 활발

<table>
<tr><td></td><td></td></tr>
<tr><td>개발제한구역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동물 보호 중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300마리 이상 밀집 사육 중
향후 시설 이전 및 재건축 등 추진 예정</td><td>동물보호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지어 임시 보호 중
40여마리를 보호 중이며, 봉사·기부금 통해 운영
향후 입지 등 검토 후 시설 재건축 추진 예정</td></tr>
<tr><td></td><td>⇒ </td></tr>
<tr><td colspan="2">P시설에서 보호 중인 ‘내리’는 심각한 피부병, 찰과상, 영양실조 상태에서 구조되었으나 긴 치료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고령으로 입양이 쉽지 않아서 P시설에서 8년 째 건강하게 보호 중</td></tr>
<tr><td></td><td>⇒ </td></tr>
<tr><td colspan="2">염산테러에 눈이 녹은 채 구조된 포천이는 A 시설에서 수술·치료로 건강 회복 후 건강하게 보호 중</td></tr>
</table>